

「 하나 e-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 」 특약(구 하나은행)

1. 개정시행일: 2016. 6. 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하나 e-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 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조 약관의 적용 하나 e-플러스 공동구매 정기 예금 (이하 "이 예금 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고단위 플러스 특약 (구 하나은행)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 및 『거치식 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 합니다.</p> <p>제 2조~제7조 (내용생략)</p> <p><부칙> 제 1 조 본 약관은 2013. 4. 3부터 시행한다 . 제 2 조 본 약관은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 하며 , 기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.</p>	<p>하나 e-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</p> <p>제 1조 약관의 적용 하나 e-플러스 공동구매 정기 예금 (이하 "이 예금 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고단위 플러스 특약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 예금약관』을 적용 합니다.</p> <p>제 2조~제7조 (좌동)</p> <p>(삭제)</p>	<p>통합약관에 따른 약관명 수정</p> <p>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</p> <p>부칙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